

Q & A

궁 · 금 · 합 · 니 · 다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방화구획선상에는 내화구조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3조 1항에 벽의 경우를 보면 철근콘크리트나 벽돌조 외에 대체가 안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방화유리문을 방화구획선상에 사용 설치하여도 법적인 방화구획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건축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종방화문이란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32호에서 정한 성능(개폐력, 개폐반복성, 비틀림강도, 연직하중강도, 내충격성, 방화성, 차연성 등 7개 항목)을 갖춘 것으로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이라면 유리방화문이라 하더라도 사용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유리방화문은 갑종방화문의 목적에 한하는 것이며, 내화구조의 벽을 대용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분말소화약제에서 걸보기비중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걸보기비중이란 분말을 어느 규정된 방법으로 일정한 용기에 담았을 때의 중량을 그 용기의 내용적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분말야금에서의 걸보기비중은 분말의 사전 처리 및 소결(燒結)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분말을 가압 성형할 때 일정한 체적 또는 중량의 분말을 금형에 채우고 이것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 성형합니다.

만일 일정한 압력으로 프레스 작업할 때 겉보기비중이 변하지 않을 때에만 압력이 일정할 것이고, 또 한편 일정한 압력으로 프레스 작업을 할 때 일정한 겉보기비중은 같은 높이의 성형체를 만드는 데 필요하게 됩니다.

Q 건축물 보수 및 증·개축시 건축물 내부 마감재로 설치되는 배관·덕트 보온단열재에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의 난연성기준 시험(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6-476호)으로 불연재료(1급), 준불연재료(2급), 난연재료(3급)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화재보험요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방재시험연구원은 소방용 기계기구, 건축구조 및 재료, 기타 방화 및 안전관련 제품에 대한 'FLK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LK 인증을 득한 불연내장재 제품을 사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화재보험 요율서상 기본요율을 할인해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연내장재할인]

“구조급수가 1급 또는 2급인 일반물건으로서 반자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반자에 사용한 내장재가 불연재료(FLK 인증품)인 경우에는 기본요율의 5%를 할인하여 적용”

Q 케이블 난연성 시험에서 연소방지도료를 도포한 케이블의 경우 연소방지도료의 성능 유지를 위한 내구연한이 있나요? 또한 케이블이 상호 연결된 부분(접속점)에는 난연도료를 도포해야 하는데 그 접속점 인근거리에 있는 케이블에도 도포해야 하는지, 케이블(154kv, 3기닥)이 연소할 경우 인근 측면케이블에 전이될 우려가 있는 유효거리는 통상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 현재 내구연한을 규정한 행정사항은 없으며 연소방지도료의 설치환경 조건에 따라 그 성능의 열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소방지도료가 접속점 부근의 화재로 인한 연소 확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때, 접속점 인근에 설치된 케이블에도 연소방지도료를 도포하는 것이 적극적인 화재 예방 조치일 것입니다.

케이블 트레이에 다중 포설 또는 수평 이격 포설된 케이블의 연소 가능 정도는 아직 연구되어 발표된 사례가 없으며, 따라서 수평 유효 안전 이격거리는 케이블 종류에 따라 정량화된 자료는 없습니다.

Q 공동주택의 경우 몇 층 이상일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A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특별피난계단의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35조에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